

2026년 4-H청년농업인 기초영농지원 사업 공고(수정)

「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‘4-H청년농업인 기초영농지원 사업’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13.

원 주 시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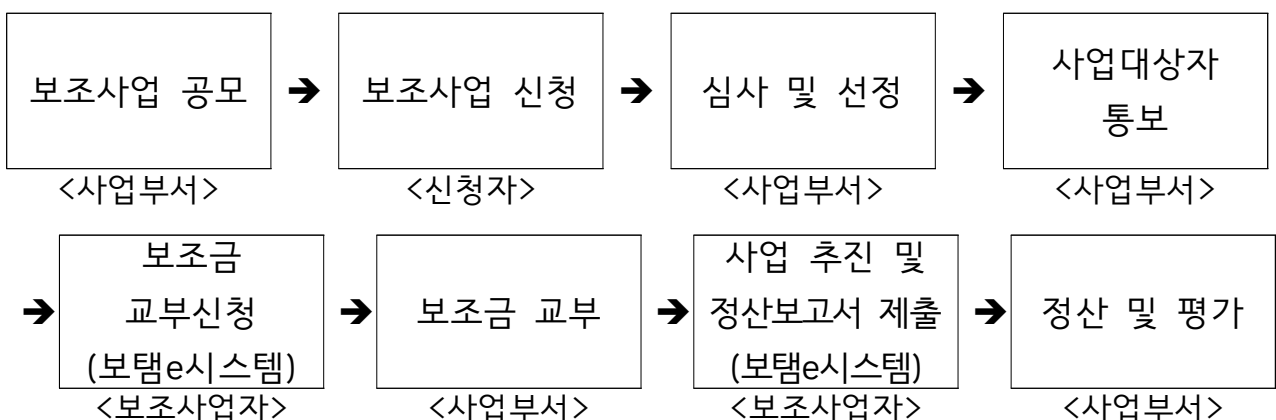
1. 사업 개요

- 사업기간: 2026. 1.~12.
- 사업명: 4-H청년농업인 기초영농지원
- 사업량: 1개소
- 총사업비: 30백만 원(도비 8.1백만 원, 시비 18.9백만 원, 자부담 3백만 원)
- 사업내용(지원내역): 생산·가공·상품화 시설 등 영농기반 조성
 - 기초 영농기반 조성(하우스, 관수·관비시설, 소형농업기계 등)
 - 창업 관련 시설 장비(가공상품화 장비, 체험공간 조성, 교육시설 등)
- ※ 단순 소모성 농자재 구입 지원 불가

2. 신청 자격

- (수정 후) 원주시 영농4-H회원(활동하고 있는 회원)
- ※ (수정 전) 공고일 현재 원주시 영농4-H회원(활동하고 있는 회원)
- ※ 부부4-H회원의 경우 공동경영주 등록 시 가점 부여
성평등 교육 이수 회원 가점 부여

3. 사업추진 절차



- 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‘산학협동심의회’의 심의를 거쳐 선정
-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을 활용 하여 사업 수행

4. 신청서 접수

- 신청·접수기간: 2026. 1. 13.(화)~1. 30.(금) (09:00~18:00 공휴일 제외)
- 신청방법: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- 2026. 1. 30.(금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- 접수처: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농업인육성팀
- 제출서류: 사업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(서식 참조)
 - 신청서식은 원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파일 사용
- 신청 시 유의사항
 - 사업 진행 시 작목별 생산량, 소득분석 자료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자료를 제공해야 함
 - 사업 취지에 적합한 유자격업체를 선정하고, 인증받은 기자재를 구입 하여야 함
- 기타문의: 농촌자원과 농업인육성팀(☎737-4156)

5. 심사 및 통보

- 심사선정: 원주시 산학협동심의회위원회
- 선정기준: 사업의 효과성, 신청예산의 타당성, 참여농가의 사업의지 등 종합적으로 심의 선정
- 결과통보: 2026년 2월 말경 선정자에 한 해 개별 통지

6. 지침설명회 및 사업참여자 교육

- 교육일시: 사업대상자 확정 후(세부일정 별도 통보)
- 교육장소: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
- 참석대상: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보조사업자

7. 보조금 지급

- 선정된 사업은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원

- 보조금 교부신청 시 보조사업자의 청렴서약서, 보조금 교육 수료증 제출
-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원칙
- 교부신청 및 교부처: 사업관련 주관부서
- 구비서류: 보조금교부신청서, 사업수행계획서(세부산출내역서), 청렴서약서, 보조금 교육 수료증, 보조금 통장 및 결제전용카드 사본 등

8. 정산 및 평가

- 사업완료 후 2개월이내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
- 사업실적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(필요시 현지조사 병행)
 - 중간평가결과 부진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2차 보조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
-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보조금 예산편성 시 반영

9. 기 타

-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,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함.
-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.
- 사업선정 후 임의 포기 또는 보조금 집행부적정 등으로 보조금 환수조치 된 단체에 대하여는 차기년도 사업신청(선정) 배제
- 사업선정 후 보조금 횡령 등으로 인해 단체 또는 보조금 집행 관련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향후 3년간 사업신청(선정) 배제
- 보조금 교부신청, 보조사업의 수행,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, 보조사업자 제재,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「지방보조금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, 「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그 밖에 관련된 개별 법 등에 따름.

붙임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. 끝.